

[] 부여
사물주소 [] 변경 신청서
[] 폐지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14일
신청인 (대표자)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	팩스번호	
	주소				
신청내용	행정구역				
	시설물 위치 ※ 사물번호는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	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		도로명,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	
		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		도로명 및 사물번호	
	시설물의 유형				
	시설물의 명칭				
	부여·변경·폐지 사유				
	사물주소판	[] 교부		[] 미교부	
※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.					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·변경·폐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. 시설물의 설치계획서(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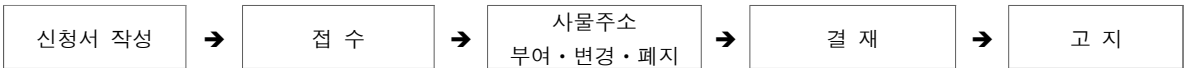
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.

① 문자 메시지 [] ② 전자우편 [] ③ 팩스 []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(도로명주소 담당부서)